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65회 제2차 정례회 (2023. 11. 30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권 하 나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3-133
- 나. 제안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안일자: 2023년 11월 17일(금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3년 11월 20일(월)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(5년)을 연장하여 마포농수산물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의2)

4. 관계법령

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

5. 검토보고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.
- 마포구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8년 본 조례를 제정하였음. 이후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가 개정(2014.5.28.)되어 ‘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할 때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이에 본 조례는 2018년에 제3조의2(존속기한)를 신설하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.12.31.까지로 명시하였음.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준치의 타당성과 사업의 지속성, 재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. 현재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운영수입금 전액이 토지·건물임대료 및 인건비,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시장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, 동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또한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같은 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제9항에 따른 ‘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야 함.
- 2023. 4. 6. 개최한 ‘2023년 마포구 제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’의 심의 결과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, 심의 이후인 2023. 8. 24.부터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음.
- 이와 같이 살펴본 바,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규정한 적절한 절차를 거친 바,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■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